

#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지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94
----------	-----

2023년 9월 12일  
교육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0일, 정지웅 의원
2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3. 상정일자 :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 
(2023년 9월 12일 상정, 원안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정지웅 의원)

#### 1. 제안이유

- 2022. 1.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 청구 사무에 대한 주체가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로 바뀜
- 이에 따라 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」를 폐지함.

## III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폐지조례안은 2023년 8월 10일 정지웅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994호로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폐지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- 지난 2021년 전부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‘법’)은<sup>1)</sup> 그동안 舊법 15조제1항<sup>2)</sup>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사항을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·제정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·개정·폐지에 대한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고,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 기준 역시 지방의회

1) 지방자치법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전부개정]

2) 제15조(조례의 제정과 폐지 청구)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“19세 이상의 주민”이라 한다)은 시·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(連署)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
- 따라서 동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사라져 법적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.

[표-1] 지방자치법 중 주민조례청구 등에 관한 법령 변화

<p><b>舊 「지방자치법」</b> 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092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</p> <p><b>제15조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 ①</b>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“19세 이상의 주민”이라 한다)은 시·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(連署)로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	<p><b>現 「지방자치법」</b>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전부개정]</p> <p><b>제19조(조례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청구) ①</b>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②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·청구대상·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<b>법률</b>로 정한다.</p> <p><b>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</b>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495호, 2021. 10. 19., 제정]</p> <p><b>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자)</b>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“청구권자”라 한다)은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(이하 “지방의회”라 한다)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(이하 “주민조례청구”라 한다)할 수 있다.</u></p> <p><b>제5조(주민조례청구 요건) ①</b>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<b>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 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.</b> 1.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·도: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</p>
---	---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지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(정지웅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99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0일

발 의 자: 정지웅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구미경, 김길영,  
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 
김용호, 김재진, 김종길,  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 
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  
박 석, 박영한, 박환희,  
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 
이봉준, 이상욱, 최민규,  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6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2022. 1.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 청구 사무에 대한 주체가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로 바뀜
- 이에 따라 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지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」를 폐지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제1항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전부개정]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495호, 2021. 10. 19., 제정]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